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한정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--|-------|
| 의 안 번 호 | 12650 |
|--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8. 3. 23.

발의자 : 김한정 · 강창일 · 김두관
김철민 · 문희상 · 서영교
손혜원 · 신창현 · 원혜영
유승희 · 윤후덕 · 위성곤
이용득 · 전해철 · 진선미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그 행정 목적 달성을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 비록 행정형벌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맞게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

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벌칙 조항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정도가 상이하여 법의 생명인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임.

한편,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,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.

이에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

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(안 제24조 개정).

법률 제 호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200만원”을 “5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24조(과태료) ① 제6조를 위반 한 자에게는 <u>200만원</u>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 (생 략) | 제24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<u>500만원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|